

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6. 12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8. 06. 16
- 다. 상 정 일 자 : 2008. 06. 19 (제1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
제2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청소행정과장 김한돈)

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 「하수도법」과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 제정(2006. 9. 27), 시행(2007. 9. 28)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함

3. 관련법령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4. 주요내용

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정함(안 제2조)

5. 검토의견

본 조례 제정 건은

-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축류 및 가금류 등에 대하여 사육장소의 제한적 지정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

되며

- 세계도처에서 광우병, 조류독감 등 희귀병원충이 창궐하여 국민의 생명에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작금의 실정을 파악,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와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- 중구 등 14개 구·군에서 기이 조례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동구에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
- 특히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의 장소제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질의답변요지 : 생 락

7. 토 론 요 지 : 없 음

8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